# 2021년도 제1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5. 25.(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1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11건(안건번호 제2021-55796호~5649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55796호~55798호는 ★★★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55799호~55811호는 ★★★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55812호는 ★★★ 블로그에 음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55813호는 ★★★ ♤♤♤에 악보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개인적인 질문 목적으로 복제물을 게시한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저작권 보호의식의 고취가 필요한 점들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55814호는 ○○○이라는 사이트에 유튜브 영상의 캡쳐 이미지를 게시한 사안으로 오로지 심의대상 게시물 자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전송이 이루어져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03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85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1-4696호~555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85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11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11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5796호~5579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

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5796호~55798호는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5799호~55811호는 민원인이 신고 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5799호~55811호는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581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음악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규정에는 전송되는 음원의 경우 30초까지는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심의 대상 게시물은 60초가 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구함.

-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581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581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에 게시된 악보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

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해당 게시물은 질문 목적은 맞지만 학습 목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악보를 유포하기 위한 목적의 게시물은 아닌 것 같음.

- B 위원: 게시물내 악보 분량이 많지만, 저작물명으로 ★★★에서 검색했을 때 이 게시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음.

- A 위원: 예를 들어 '코드 바꾸는 법'으로 검색했을 때는 해당 게시물이 나올 것임.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취지의 안내'로서 경고의 시정권고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논의해왔던 부분임. 단순히 부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A 위원: 일반 민원인이 문제제기하면 불법이 아니고 권리자가 문제제기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결정 논의 내용임. 그래서 완전한 시정조치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들어왔으니 안내는 해라' 하는 정도로 그동안 몇 번 해왔으니 그렇게 하는게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참고 사항으로 ★★★ ★★★은 질문에 대한 답이 달리면 질문글의 작성자도 자신의 글을 수정이나 삭제할 수 없음. 경고의 시정권고가 전달되더라도 이용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전곡을 다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28조에 따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목적 등 일부 이용 출처표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전체 악보 4장 중 3장이 게시되어 있음.

- B 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36조의 출판 규정을 보면 피스당 10%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A 위원: 핵심은 권리자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봤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가 또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의 시정권고가 의미가 있음.

- C 위원: 경고 대상이 OSP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경고는 이용자에게 하고 있음.

- A 위원: OSP가 이용자에게 '저작권보호원에서 이러한 경고를 하였으니 주의하세요'라고 전달하는 것임.

- D 위원: ★★★가 악보 필터링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됨.

- C 위원: 하단에 태그 '음악', '이론작곡'은 누가 작성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질문글을 작성한 이용자가 작성한 것임.

- B 위원: ★★★ ♤♤♤은 정말로 삭제가 안되는 것인가?

- 오진해 전문위원: 삭제가 안되며, ♤♤♤ 콘텐츠 자체가 ★★★에 올라가는 순간 ★★★에서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음.

- A 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에서 약간 조장하는 것처럼 보임.

- D 위원: ★★★에서 저작권 침해 사안 등에 대하여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 A 위원: 삭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가 문제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이용자 스스로 시정을 할 수 없음.

- A 위원: 해당 부분은 ★★★가 도와주던지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핵심은 지금 당장 이 게시물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답을 하기가 궁색해지지 않게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임.

- B 위원: ★★★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게시물을 내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상함.

- A 위원: 내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고만 하면 본인이 알아서 삭제를 하거나 할 수 없고 ★★★가 더 깊이 개입을 해야

함. ★★★가 관리자로서 직접 콘텐츠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임.

- 오진해 전문위원: 일반적인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하면 ★★★가 게시물을 삭제하지만,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면 게시물 자체는 그대로 있거나 이용자가 알아서 삭제를 하는데 ♤♤♤은 이용자의 삭제는 불가능함.

- A 위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지난 제2021-101회에서 심의했던 ★★★ ★★★★★★ 쇼핑몰 게시물 건의 경우, 현재 저작권 침해 부분만 수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제품의 판매 자체가 중단되었음. 경고의 시정권고에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느낌. 제101회 심의안건의 경우 ★★★가 임의로 중단시켰는지 아니면 판매자가 스스로 중단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한 취지는 저작권 침해를 안내하고 저작권법 준수를 촉구하는 것이었지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경고가 그보다 큰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음.

- C 위원: 저는 경고 의견임. 게시자는 상품 판매자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러면 문제가 있음.

- D 위원: ♤♤♤ 말고 블로그 서비스에도 이러한 악보가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볼 때 OSP에게 서비스 전체를 한번 검토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악보가 왜 필터링이 안되는지 보니 저작권이 너무 복잡함. 사후 70년도 있고 예를 들어 성가 쪽은 공개된 저작물이 너무 많아서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것은 어려움.

- A 위원: 성가는 최근에 창작되는 CCM 외에는 상당수 보호기간이 만료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해당 악보는 저작권 만료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악보는 현재 저작권이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논의는 충분한 것 같음. 해당 안건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E 위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5813호는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581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전형적인 체리피킹으로 핵심 콘텐츠만 뽑아서 게시한 것으로 보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하

시는지 의견을 구함.

- C, D,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581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5815호~5649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방송)유 퀴즈 온 더 블럭(2018)'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6344호 '(방송)유 퀴즈 온 더 블럭(2018)'은 2018. 8. 29. 부터 방영중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웹하드에서 105포인트에 판매 중임.
(방송 '(방송)알쓸범잡(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56408호 방송 '(방송)알쓸범잡(2021)'은 2021. 4. 4. 부터 방영중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웹하드에서 9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2건을 포함한 1,037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시정권고의 취지가 최근 발매된 영상물의 부가 판권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왜 2002년 저작물인 ~~'반지의 제왕'~~ 같은 것이 올라오

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최근 영화를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유명 작품들을 재개봉하는 추세가 강세를 보였음.

- A 위원: 플랫폼 서비스가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음. 극장 개봉한 작품들을 소비하는 형태 이외에 다른 플랫폼들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55815호~5649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D,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55815호~5649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55813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건번호 제2021-55796**

호~55798호, 제2021-55799호~55811호, 제2021-55812호, 제2021-55814호는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1-55815호~5649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4696호~5554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1.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